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한 철 우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청주시와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됨(2014. 7. 1. 시행)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도세 감면율 적용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주청원 통합후 적용할 도세 감면율 특례 규정 신설(안 제12조)
 - 통합시 설치 이후에도 종전의 청원군 지역은 통합시가 설립된 때부터 5년간 통합전 청원군 지역과 동일한 감면율 적용
- O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안 제16조 및 제18조)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됨 (2014. 7. 1. 시행)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도세 감면율 적용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3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합전 청원군의 지역은 청주시 설치된때부터 5년간 통합되기전 청원군 지역의 감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안 12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를 도세로, 법 제96조를 법 제18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후에도 기존 청원군 지역의 도세 감면률을 통합 후 5년간 원래대로 적용하도록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